영등포구의회
제15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9. 7.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李憲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호로 2010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형 간염 검사 신설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유료접종 폐지 등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고 신설된 조문과 삭제된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에 따라 제2조제2항 별표 제4호의

- “가목, 나목, 바목, 사목”을 삭제하고, “다목, 라목, 마목, 아목”을 각각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변경.
- 가목의 “간염”을 “B형 간염 접종”으로 하고 “성인”과 “소아”로 구분.

○ 제2조제2항 별표 제5호의 “가목 간염검사”를 “A형 간염검사”, “B·C형 간염검사”로 구분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명시.

○ 제2조제2항 별표 “제6호 구강보건과 진료비”를 “제6호 구강보건실 진료비”로 하고 “가목”을 삭제.

○ 제2조제2항 별표 내 삭제된 항목을 정비하여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7호. 건강증진센터”와 “제8호. 골밀도실”을 통합하여 “제6호. 측정수수료”로 변경.

○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으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면제근거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9호”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더불어 유료접종 중 무료접종으로 확대된 종목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조례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관련 별표 내 간염 관련 항목 신설 및 세분화와 수수료 구분, 유료접종에서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항목 삭제 및 항목번호 정비로 보기 쉽게 하였으며,

○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여 경로우대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제4항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거주지 지역제한이 없던 것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하였음.

○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정기예방접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2005.7.13, 2006.9.27, 2008.2.29〉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9의2. 수두

10.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6.9.27〉

〔전문개정 1995.1.5〕

제12조(임시예방접종)

①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2006.9.27, 2008.2.29〉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6.9.27〉